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1497    |
| 의 퇴 인 | 김성회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5.8.20. |
| 추계번호  | 25D3363    |

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4억 8,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75억 4,400만원(연평균 15억 900만원)으로 추계됨
- 개정안의 연계 법안인 「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」<sup>1)</sup>에서 추계된 비용과 동일한 비용으로, 재정소요가 중복으로 발생하지 않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합계    | 연평균  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인건비 등 | 1,294 | 1,270 | 1,301 | 1,333 | 1,366 | 6,565 | 1,313 |
| 사업비   | 188   | 192   | 196   | 200   | 204   | 978   | 196   |
| 합계    | 1,482 | 1,462 | 1,497 | 1,533 | 1,570 | 7,544 | 1,509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45조의2<br>(헌법개정특별위원회) 신설   | 「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헌법개정제안안의 입안을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둠(제1항)<br>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함.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함(제2항)<br>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일까지로 하며,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(제3항)<br>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「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외에도 제57조제1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,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음(제9항)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45조의3<br>(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) 신설 |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 및 헌법개정제안안 입안에 관한 국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아래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를 둠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1) 의안번호 제2211496호 「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」, 2025.7.16. 김성희의원 대표발의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   |          |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,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촉함(제2항)<br>위원의 임기는 임명 후 최초로 도래하는 국회의원 총선거일까지로 함(제3항)<br>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둠(제6항)<br>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의 운영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(제7항) |   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45조의2<br>(헌법개정특별위원회) 신설   | ○    | -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45조의3<br>(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) 신설 | ○    | -             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개정안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신설하여 헌법개정 논의를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고, 단계적·점진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
- 연계법률인 「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」<sup>2)</sup>에 따르면,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제안안을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직전년도 11월 30일까지 의결로써 입안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
2) 「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」(김성희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 2211496호)

- 또한, “국민개헌청원”은 헌법개정 관련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“전자청원시스템”을 통해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국민개헌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헌법 개정특별위원회에 보고함
- 개정안에 따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를 신설·운영할 경우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, 기본경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
  -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는 100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의 운영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방법 관련 구체적인 계획의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, 다른 상설위원회의 평균 사업비를 기준으로 추계함
  - 국민개헌청원의 제출·접수·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은 현재 국회가 구축·운영하고 있는 “전자청원시스템”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추계에서 제외함
-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은 위원회의 사무를 고려하여 상임위원회 중 공무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위원회 인력 규모를 고려하여 추정함<sup>3)</sup>
  -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명으로 다른 위원회에 비해 규모가 큰 반면, 상설조직으로서 헌법개정 논의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헌법개정 관련 안건 수,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국민개헌청원 건수 등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-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라 회의공간 및 사무실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, 국회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에 대한 재정소요는 추계에서 제외함<sup>4)</sup>

3) 국회의원 수는 「공직선거법」 개정 사항으로, 본 추계에서는 국회의원 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

4) 국회 예산 중 ‘국회청사유지및관리(2033-300)사업’ 예산으로 2025년 57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회의실 및 사무공간 확보에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

- 개정안 부칙은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# 가.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신설(안 제45조의2 신설)

- 추계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따른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및 사업비를 추계함
- 현재 상임위원회 중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인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, 여성가족위원회, 정보위원회로, 정원이 각각 13명, 11명, 9명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여,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원 공무원 인력규모는 11명으로 가정함

[표 2] 제21대 국회 국회운영위원회, 여성가족위원회, 정보위원회 현황

(단위: 명, 건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회운영위원회 | 여성가족위원회 | 정보위원회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위원 정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8      | 17      | 12    |
| 공무원 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      | 11      | 9     |
| 제21대 국회 의안 접수건수<br>(2020.5.~2024.5.) | 480     | 447     | 33    |

자료: 「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」(2024.6.24.), 「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」(2020.6.10.) 및 의안정보시스템

- 증원인력 11명에 대한 직급별 배분은 「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」의 국회운영위원회, 여성가족위원회, 정보위원회의 직급별 구성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가정함

[표 3]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의 직급별 구성 추정

(단위: 명)

|           | 수석전문위원 | 전문위원 | 3~4급 | 4~5급 | 6 | 7 | 8 | 9 | 합계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|---|---|---|----|
| 헌법개정특별위원회 | 1      | 1    | 2    | 2    | 1 | 1 | 1 | 2 | 11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위원회 지원 공무원 1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, 기관부담금, 기본경비, 자산취득비를 추계함

- 인건비는 2025년 국회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참고<sup>5)</sup>하여, 최근 3년간 평균 공무원임금상승률 2.4%를 적용하고, 기관부담금과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 요율, 공무원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며, 기본경비는 국회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(8.2%)을 고려하여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음
  - 공무원 보수는 기본연봉 및 봉급에 최근 3년(2022~2024)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.4%를 적용하고, 수당(입법수당 등)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
  - 기관부담금(공무원연금,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)은 공무원 보수에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<sup>6)</sup>을 적용하여 산출함
  - 자산취득비는 2026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증원인력 11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5년 4월)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<sup>7)</sup>를 곱하여 산출함

[표 4]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합계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보수    | 1,022 | 1,047 | 1,072 | 1,098 | 1,124 | 5,362 |
| 기관부담금 | 134   | 137   | 141   | 146   | 150   | 709   |
| 기본경비  | 84    | 86    | 88    | 90    | 92    | 440   |
| 자산취득비 | 55    | 0     | 0     | 0     | 0     | 55    |
| 합계    | 1,294 | 1,270 | 1,301 | 1,333 | 1,366 | 6,565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사업비)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사업비는 위원회의 정원 규모를 고려하여 국회운영위원회, 여성가족위원회, 정보위원회 2025년 운영지원 사업비의 평균 1억 8,400만원<sup>8)</sup>으로 가정하고, 동 사업비에 국회예산정

5) 수석전문위원 및 4~5급은 기본연봉, 입법수당,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이며, 6~9급은 봉급, 입법수당,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연가보상비, 성과상여금, 시간외 근무수당, 정근수당, 정근수당가산금, 명절수당을 포함한 금액임

6)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(2025. 7.)

| 구 분      | 2026   | 2027   | 2028   | 2029   | 2030  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기관부담률(%) | 13.066 | 13.130 | 13.194 | 13.286 | 13.380 |

7) 2026년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4,981,000원임

8) 2025년 운영경비는 국회운영위원회 2억 4,500만원, 여성가족위원회 1억 5,500만원, 정보위원회 1억

책치가 전망(2025년 7월)한 소비자물가상승률<sup>9)</sup>을 적용하여 추계하면  
다음 표와 같음

[표 5]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사업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사업비 | 188  | 192  | 196  | 200  | 204  | 978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나. 추계결과

-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75억 4,4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합계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인건비 등 | 1,294 | 1,270 | 1,301 | 1,333 | 1,366 | 6,565 |
| 사업비   | 188   | 192   | 196   | 200   | 204   | 978   |
| 합계    | 1,482 | 1,462 | 1,497 | 1,533 | 1,570 | 7,544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및 사업비 규모를 국회운영위원회, 여성가족위원회, 정보위원회의 평균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실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, 증원인력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5,300만원임

9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4월)

|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소비자물가상승률(CPI, %)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전수연 | 김안나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전수연 | 02-6788-4667 | syjeon@assembly.go.kr |